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120
----------	------

2026년 6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나. 제출일 : 2025년 8월 26일
다. 회부일 : 2025년 8월 26일
라. 상정일 :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6월 16일 상정·의결(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가.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2025.7.28.)한 주민조례청구(「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의 22.6%에서 27%로 변경(안 제4조)
-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측정단위(별표 1) 및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별표 2) 추가 및 변경(안 제8조제2항 관련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2025. 8. 29. ~ 9. 2.)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2025.7.28.)한 주민청구조례안(「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임.

〈 본 주민조례청구 개요 〉

- 청구인: 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 22명(공동대표)
- 발의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
- 의안번호: 11-03120
- 제안일: 2025년 8월 26일
- 회부일: 2025년 8월 26일
- 청구사유: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안 제시
- 주요내용: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22.6% → 27.0%)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 변경·추가(생활인구, 도서관, 지역축제 등)

〈 본 주민조례청구의 추진경과 〉

- 2024.8.30. 청구서 접수
- 2024.9.20.~2025.4.13. 주민서명 진행(교육감, 구로구청장 선거기간 제외)
- 2025.4.14. 청구인 명부 제출
- 2025.4.18.~4.28. 청구인 명부 공표 및 열람
- 2025.5.8. 이의신청 심사 결정
- 2025.7.28. 주민청구조례안 수리(37,662명 중 31,453명 유효서명)
- 2025.8.26.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조례안 발의
- 2025.8.26.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회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보통세의 22.6%에서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도세의 27%)에 준하여 27%로 변경(안 제4조)하고,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측정단위(별표1) 및 측정단위별 수치산정 기준(별표2) 중 일부를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각 자치구의 문화적·관광적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 및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u>100분의 22.6</u> 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③ (생 략)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100분의 27</u> ----- ----- ③ (현행과 같음)

※ 본 개정안(주민청구조례안)의 주요 내용

- ▶ 조정교부금의 재원 규모 조정 (보통세 22.6% → 27%)
- ▶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단위·항목 신설 및 변경
 - 측정단위 변경 : 인구수 → '인구수' 또는 '생활 인구수' 중 큰 수
 - 측정단위 신설 : 문화지수, 자치구 산하기관 근로자 수

- 청구 사유는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공동재산세 상향 및 배분 방식 변경안의 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도세의 27%)에 준하여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의 현행 22.6%에서 27%로 상향하고, 자치구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각 자치구의 문화적, 관광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 본 개정안은 주민의 직접 청구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주민 참여와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주민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서울특별시(이하 '시(市)'), 자치구 및 전체 시민 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책임과 의무로 보이는데,
 - 본 개정안의 취지를 존중하되, 조례의 효력 범위(「지방자치법」 제28조, “법령의 범위에서”), 재원조정 제도의 목적을 감안한 교부율 인상 규모의 적정성, 시(市) 재정의 안정성, 타 광역시와의 비교, 각 자치구 간 형평성, 행·재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 주민발안(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 조정(수정·단계적 시행 등) 등도 검토할 수 있음.
- 특히,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여 '최소한의' 또는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의 의사는 존중하되, 법령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른 조정률을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에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text{조정률} = \frac{\text{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의 합산액} + \text{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text{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 기준재정수요액의 합산액}}$$

가. 조정교부금

-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제196조)과 「지방재정법」(제29조의2, 제29조의3)을 근거로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수준을 맞추기 위한 수직적 재정조정 제도임.
- 즉,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여유 재원을 형성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며,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간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는 “최소 보장적 성격”의 재원인바, 교부율의 급격한 상향이나 기준 재정수요 산정 방식의 변경은 재정수요 보전 취지를 벗어나, 과도한 이전 재원의 확대 또는 자치구 간 형평성 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요 〉

○ 조정교부금 도입 배경

-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행정구 → 자치구)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도입.
- 자치구 간 세원편차와 재정격차를 조정하여 표준적 행정서비스 제공(부족분 보전)

○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요

- 근거: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재원: 서울특별시 보통세의 22.6% (24년 결산 기준 4조 2,440억원)
- 종류: 일반조정교부금(90%), 특별조정교부금(10%)
- 주요기능: ① 자치구 재원 보전기능(부족재원 지원), ② 자치구 재정 격차 완화
- 배분방식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
 - 특별조정교부금 : 재난·재해 및 공공시설 신설·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교부

출처 : 행정안전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2012, 2015) 중 '제도이력 및 정책실명제' 발취 및 재구성

- ※ 「지방자치법」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총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총당하기 위한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정교부금: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총당하기 위한 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총당하기 위한 교부금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②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다.

※ 지방재정 조정제도

- **수직적 자원조정:** 상위 정부(국가→광역, 광역→기초)가 하위 정부에 재정을 이전하여 하위 정부의 재정 부족을 보완하는 방식의 재정조정 제도. (국가→지방교부세, 국가→국고보조금, 시·도→시·군·구 조정교부금, 서울시→25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 **수평적 자원조정:** 같은 수준의 지방자치단체(기초↔기초, 광역↔광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재원을 재배분하는 제도. 재정 규모가 큰 자치단체가 내고, 재정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가 받거나, 공동 재원을 모아 형편에 따라 나누는 방식. (서울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 **서울특별시의 자원 조정:** 서울특별시는 각 자치구의 자원 형평화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와 ‘조정교부금’을 혼합하여 사용. **수직적·수평적 자원조정이 혼합된 방식**으로, 각 자치구별 재정 형평화 기능은 유효하나, 제도 설계가 복잡하고, 각 자치구별 갈등 조정 수단이 필요함.

※ 조정교부금 관련 주요 용어

- **기준재정수요액**: 인구, 면적 등 자치구 여건에 비추어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수요
- **기준재정수입액**: 자치구별 징수 가능한 재정수입
- **기준재정수요 총족도** : 자치구의 재정수입이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
→ $(\text{기준재정수입액} / \text{기준재정수요액}) \times 100$
- **배분후총족도**: 기준재정수입액과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가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
→ $(\text{기준재정수입액} + \text{일반조정교부금 배분액}) / \text{기준재정수요액} \times 100$
- **재정부족액**: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금액
→ $\text{재정부족액} = \text{기준재정수요액} - \text{기준재정수입액}$
- **재정자립도**: 자체 수입으로 운영 가능한 재정 → $[(\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 **재정자주도**: 스스로의 자원성을 갖고 운영 가능한 재정
→ $[(\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 \text{지방교부세} + \text{조정교부금})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 한편, 안 제4조에서 조정교부율을 상향하려는 비율(22.6%→27%)이 시(市)에는 적용되지 않는 「지방재정법」 제29조를 기준으로 발안한 제안 이유가 타당한지와 조정교부율 상향으로 인한 시(市) 및 자치구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나. 교부율 상향(22.6%→27%)

- 안 제4조제2항은 교부율을 현행 보통세의 22.6%에서 27%로 4.4% 상향하려는 것으로, 2026년 본예산 기준 약 8,77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보통세 증감에 따라 결정되어, 향후 경기 변화에 따라 부담 규모가 확대·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함.

〈 조정교부금의 조정교부율 변경 내역〉

1988.5.	1991.1.	2011.1.	2013.1.	2016.1.
취·등록세의 60%	취·등록세의 50%	취득세의 50%	보통세의 21.0%	보통세의 22.6%
조정교부금 신설	특별조정교부금 신설	재원 변경	재원 변경	재원규모 변경

출처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정교부율 변경(22.6% → 27%)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액 규모 추계 〉

(2026년 본예산 기준 / 단위: 천원)

구 분	22.6%	27.0%	증액 규모
조정교부금	4,523,357,600	5,400,531,744	877,174,144
보통세	4,505,485,376	5,382,659,520	877,174,144
당해연도분	4,469,529,454	5,339,703,330	870,173,876
지난연도분	35,955,922	42,956,190	7,000,268
레저세	16,520,624	16,520,624	-
지역자원시설세	1,351,600	1,351,600	-

출처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최근 3년간 조정교부금 배분 전·후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

(단위: %)

자치구명	2026년		2025년		2024년	
	배분 전	배분 후	배분 전	배분 후	배분 전	배분 후
종로구	79.9	98.1	81.4	97.2	80.1	96.2
중구	93.2	98.1	93.2	97.2	92.4	96.2
용산구	79.3	98.1	79.4	97.2	78.0	96.2
성동구	69.6	98.1	69.2	97.2	67.0	96.2
광진구	63.5	98.1	63.9	97.2	63.6	96.2
동대문구	58.9	98.1	58.6	97.2	56.5	96.2
중랑구	57.7	98.1	56.1	97.2	54.2	96.2
성북구	53.7	98.1	53.2	97.2	51.4	96.2
강북구	51.6	98.1	52.5	97.2	52.9	96.2
도봉구	52.4	98.1	51.3	97.2	50.0	96.2
노원구	51.2	98.1	53.1	97.2	48.3	96.2
은평구	54.5	98.1	55.1	97.2	53.7	96.2
서대문구	61.8	98.1	63.1	97.2	61.7	96.2
마포구	74.7	98.1	75.0	97.2	73.4	96.2
양천구	64.4	98.1	63.2	97.2	61.3	96.2
강서구	63.9	98.1	64.5	97.2	62.7	96.2
구로구	59.5	98.1	60.3	97.2	58.2	96.2
금천구	63.7	98.1	63.3	97.2	61.5	96.2
영등포구	79.6	98.1	78.8	97.2	77.3	96.2
동작구	63.0	98.1	63.1	97.2	61.0	96.2
관악구	54.5	98.1	55.0	97.2	52.6	96.2
서초구	96.2	98.1	95.6	97.2	94.7	96.2
강남구	137.3	137.3	131.5	131.5	148.1	148.1
송파구	88.3	98.1	88.3	97.2	87.3	96.2
강동구	66.8	98.1	66.4	97.2	64.5	96.2

출처 : 행정국 자치행정과

〈 교부율 상향 시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

(2026년 본예산 기준 / 단위: 억원, %)

자치구명	22.6%			27.0%		
	부족액 (수요액-수입액)	충족도		부족액 (수요액-수입액)	충족도	
		배분전	배분후		배분전	배분후
종로구	873	79.9	98.1	873	79.9	104.6
중구	301	93.2	98.1	301	93.2	104.7
용산구	947	79.3	98.1	947	79.3	104.7
성동구	1,406	69.6	98.1	1,406	69.6	104.5
광진구	1,784	63.5	98.1	1,784	63.5	104.3
동대문구	2,172	58.9	98.1	2,172	58.9	104.3
중랑구	2,371	57.7	98.1	2,371	57.7	104.0
성북구	2,588	53.7	98.1	2,588	53.7	104.0
강북구	2,412	51.6	98.1	2,412	51.6	104.5
도봉구	2,323	52.4	98.1	2,323	52.4	104.2
노원구	3,091	51.2	98.1	3,091	51.2	104.0
은평구	2,618	54.5	98.1	2,618	54.5	104.3
서대문구	1,883	61.8	98.1	1,883	61.8	104.3
마포구	1,382	74.7	98.1	1,382	74.7	104.0
양천구	1,924	64.4	98.1	1,924	64.4	104.1
강서구	2,422	63.9	98.1	2,422	63.9	104.0
구로구	2,246	59.5	98.1	2,246	59.5	104.1
금천구	1,686	63.7	98.1	1,686	63.7	104.3
영등포구	1,154	79.6	98.1	1,154	79.6	104.3
동작구	1,801	63.0	98.1	1,801	63.0	104.4
관악구	2,541	54.5	98.1	2,541	54.5	104.1
서초구	217	96.2	98.1	217	96.2	104.3
강남구	-	137.3	137.3	-	137.3	137.3
송파구	843	88.3	98.1	843	88.3	103.9
강동구	1,998	66.8	98.1	1,998	66.8	104.0

출처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시(市)는 광역 시·도 중 가장 많은 부채(18조 6천억원, 경기도의 281.9%)와 채무(11조 3천억원, 경기도의 227.4%)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 등을 중심으로 현재 강북권 대규모 투자, 노후 도시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 재정지원 등 광역 단위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시(市)는 자원부족 및 가중되는 부채와 채무 등의 개선을 위해 ‘차등 국고보조율 개선’, ‘대중교통 환급’, ‘지하철 무임승차 및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국고보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교부율 인상은 자치구 재정여건 개선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시(市)의 광역적 투자 여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市)-구 재정 균형, 자치구 간 재정 형평성 제고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채무 규모 〉

(매년 5월 기준, 단위: 백만원)

2026.5.	2025.5.	2024.5.	2023.5.	2022.5.
11,463,055	11,217,922	10,871,131	10,869,862	10,967,458

출처 : 서울재정포털(<https://openfinance.seoul.go.kr>, 2026.6.1. 발취 및 재구성)

〈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부채 규모 〉

(2024년 결산기준, 단위: 백만원, %)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자산	155,210,905	152,514,808	152,170,872	149,366,846	141,257,533
부채	18,628,158	18,089,182	19,360,205	18,793,544	14,562,810
부채비율	12.00%	11.86%	12.72%	12.58%	10.31%

출처 : 서울재정포털(<https://openfinance.seoul.go.kr>, 2026.6.1. 발취 및 재구성)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채 및 지방채 현황 〉

(단위: 억원)

	자산 대비 부채비율 (2024 결산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 (2024 예산기준)		
	부채	자산	부채비율	채무잔액	최종예산액	채무비율
서울	186,282	1,552,109	12.00	113,375	526,690	21.53
경기	66,086	432,552	15.28	49,848	417,140	11.95
부산	54,291	501,097	10.83	31,413	189,768	16.55
대구	26,525	387,736	6.84	23,385	122,301	19.12
인천	28,401	647,868	4.38	19,442	172,353	11.28
광주	21,182	222,792	9.51	18,236	83,151	21.93
대전	16,484	257,625	6.40	13,974	79,853	17.50
울산	10,411	154,627	6.73	7,894	60,453	13.06
세종	5,580	97,277	5.74	4,315	23,290	18.53
강원	15,010	161,041	9.32	11,071	94,014	11.78
충북	13,904	122,443	11.36	11,481	84,984	13.51
충남	19,205	165,563	11.60	17,097	116,438	14.68
전북	9,976	155,270	6.43	9,856	104,200	9.46
전남	17,367	259,425	6.69	14,580	130,306	11.19
경북	16,790	308,687	5.44	14,540	147,582	9.85
경남	14,432	232,226	6.21	10,398	135,727	7.66
제주	18,477	293,014	6.31	13,276	89,724	14.80

출처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2026.6.1. 개별정보 발취 및 재구성

다. 가산교부

- 조정교부율을 27%로 상향할 경우,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한 후에도 잔여액이 발생하고, 조례는 잔여액을 기준(「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산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가산교부는 자치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조정 교부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재정 부족분 보존)를 훼손하고, 조정교부금의 효과를 약화시키며, 자치구의 수입 예측가능성 저하, 자치구 간 형평성 왜곡, 갈등 또는 자치구의 도덕적 해이(주민 복리가 아닌 가산교부액 추가 획득을 위한 행정으로 전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과도한 가산교부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일반조정교부금의 가산교부) ① 일반조정 교부금의 총액이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하고도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자치구에 대하여 가산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교부금액은 자치구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 기준을 통해 배분하고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가산교부) 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조정교부금의 차액 중 일반조정 교부금의 차액은 당초 산정결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에 대하여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가산교부를 한다. 다만,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한 이후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산교부할 수 있다.
-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건전재정운영 평가기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1)

· 별표1 요약 (산식 제외)

1. **재정건전성:** ① 통합재정수지비율, ② 통합유동부채비율
2. **자체수입비율:** ① 지방세 수입비율, ② 지방세 수입증감률, ③ 세외수입 비율, ④ 세외수입 증감률
3. **지방보조금 비율:** ① 지방보조금 비율, ② 지방보조금 증감률
4. **재정 효율성**
 -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①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②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 자체경비 비율: ① 자체경비 비율, ② 자체경비 비율 증감률
5. **재정계획성:** ① 세수 오차 비율, ②이월 운용비 비율

※ **가산교부 관련 의견**

- **목적:** 가산교부금의 목적은 재정건전성 제고와 재정 형평성 확보임. ‘건전재정운영평가기준’은 조정교부금 제도의 목적과 충돌 없어야 하며, **가산교부는 보조적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모로 편성될 경우 재정조정의 목적을 왜곡할 수 있는바, 조정교부금 배분취지를 훼손하거나, 자치구 간 재정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조례의 개정 및 시장의 재량으로 가산교부의 제한 또는 중단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됨.**
- **객관성 및 정량성:** 가산교부금의 평가기준 중 특정 지표가 특정 자치구에 유리하게 설계되거나, 지표의 모호, 해석의 여지 등이 있으면 **자치구 간 갈등 및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여 명확성, 객관성, 정량성 등이 우선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평가항목 간 균형:** 지표별의 성격(수입성, 지출성, 효율성 등)은 구분되어 있으나, 가산점이 특정 항목에 집중되면 재정 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특히 단기 실적 중심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 **극단적인 지표(일시적 세외수입 감소) 등이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대한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자치구 노력’과 ‘구조적 요인’ 분리:** 일부 지표는 자치구의 노력(세외수입 확충)이고, 또 다른 지표는 구조적 요인(인구구조, 재산세 기반 등)으로, 재정 취약 자치구가 가산 및 가중치에서 불리해지는 구조 및 가중치의 합리성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측 가능성 및 일관성:** 자치구는 다음 연도의 예산운동을 계획해야 하여 평가기준과 결과가 예측 가능해야 하며, 변경 시 자치구 전문가·실무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한 시민 생활의 안전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교부 기준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교부율 27% 상향 시 자치구별 가산교부액 규모 〉

(2026년 본예산 기준, 단위: 억원)

자치구명	22.6%					27.0%				
	수요액	수입액	부족액	교부액	가산액	수요액	수입액	부족액	교부액	가산액
합계	129,063	86,081	42,982	40,549	-	129,063	86,081	42,982	42,982	5,462
종로구	4,336	3,463	873	792	-	4,336	3,463	873	873	201
중구	4,426	4,125	301	218	-	4,426	4,125	301	301	210
용산구	4,570	3,623	947	861	-	4,570	3,623	947	947	214
성동구	4,618	3,212	1,406	1,319	-	4,618	3,212	1,406	1,406	209
광진구	4,887	3,103	1,784	1,692	-	4,887	3,103	1,784	1,784	211
동대문구	5,283	3,112	2,172	2,072	-	5,283	3,112	2,172	2,172	228
종랑구	5,601	3,230	2,371	2,266	-	5,601	3,230	2,371	2,371	225
성북구	5,587	2,999	2,588	2,483	-	5,587	2,999	2,588	2,588	224
강북구	4,983	2,571	2,412	2,318	-	4,983	2,571	2,412	2,412	226
도봉구	4,879	2,557	2,323	2,231	-	4,879	2,557	2,323	2,323	204
노원구	6,332	3,241	3,091	2,972	-	6,332	3,241	3,091	3,091	251
은평구	5,757	3,139	2,618	2,509	-	5,757	3,139	2,618	2,618	247
서대문구	4,924	3,042	1,883	1,790	-	4,924	3,042	1,883	1,883	212
마포구	5,462	4,079	1,382	1,279	-	5,462	4,079	1,382	1,382	221
양천구	5,408	3,484	1,924	1,822	-	5,408	3,484	1,924	1,924	219
강서구	6,714	4,292	2,422	2,295	-	6,714	4,292	2,422	2,422	268
구로구	5,540	3,294	2,246	2,141	-	5,540	3,294	2,246	2,246	229
금천구	4,639	2,953	1,686	1,598	-	4,639	2,953	1,686	1,686	198
영등포구	5,669	4,515	1,154	1,047	-	5,669	4,515	1,154	1,154	245
동작구	4,872	3,072	1,801	1,709	-	4,872	3,072	1,801	1,801	216
관악구	5,583	3,042	2,541	2,435	-	5,583	3,042	2,541	2,541	230
서초구	5,779	5,561	217	108	-	5,779	5,561	217	217	248
강남구	-	-	-	-	-	-	-	-	-	-
송파구	7,195	6,352	843	708	-	7,195	6,352	843	843	282
강동구	6,019	4,020	1,998	1,885	-	6,019	4,020	1,998	1,998	243

출처 : 행정국 자치행정과

라. 산정기준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신설 및 변경)

- 안 별표1과 안 별표2 중 총 5개 ‘란’에서 ‘인구수’ 대신 ‘인구수’와 ‘생활 인구수’ 중 큰 수를 반영하고, 자치구의 도서관 수, 국가유산 수, 3년 이상 개최된 지역축제 수 등을 신설하는 것은 ‘인구의 흐름·이동 경향 등’에 따른 행정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문화지수, 자치구 산하기관 근로자 수 등 신규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재정수요의 다변화·복잡화 측면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인구수’를 ‘생활인구수’로 변경

- 측정항목·측정단위(안 별표1)
 - ‘1. 일반공공행정’ 란 중 ‘② 일반관리비’
 - ‘4. 문화및관광’ 란 중 ‘⑤ 문화체육비’
 - ‘7. 보건’ 란 중 ‘⑬ 보건위생비’
-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안 별표2) 중 ‘2. 인구수’ 란

※ ‘신설’ 항목

- 측정항목·측정단위
 - ‘4. 문화및관광’ 란 중 ‘⑤ 문화체육비’의 측정단위로 ‘문화지수’ 신설
 - ‘11. 기타’ 란 중 ‘⑱ 인건비’의 측정단위로 ‘자치구산하기관근로자수’ 신설
-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표
 - ‘5. 문화지수’를 신설하고, 수치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도서관수, 국가유산수, 3년 이상 개최된 지역축제수“

- 다만, 추가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자치구의 노력이 ‘자료의 왜곡’으로 변질될 우려, 신규 지표(문화지수, 생활 인구수 등)의 객관성·형평성 확보 여부, 항목을 확대할 경우 시(市)-자치구, 자치구 간 재정 형평성 변화, 특정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필요한 재원 조정액의 총합(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이 본 개정안이 규정하려는 보통세의 27%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본 개정안의 조정교부금의 총합이 각 자치구의 부족분을 상쇄하기 적절한 규모인지, 과다·과소 여부, 법령이 규정한 재원조정 교부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부족분 보전)한 개정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행정국은 ‘교부율 조정’ 또는 ‘측정단위 및 측정항목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객관적·합리적 분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2026년 1월에 조정교부금과 관련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연말에 준공 예정인 행정국의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합리성과 객관성 등에 기반한 판단도 고려해 볼 여지도 있음.

〈 2026년 행정국의 조정교부금 관련 학술용역 개요 〉

- 과 제 명: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적정 교부율 및 합리적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추진기간: 2026.2.~12 (11개월, 26.1.27.계약체결)
- 추진기관: 서울연구원
- 주요과업내용
 - 시·구 재정여건 및 정부정책 변화를 고려한 적정 교부율(안) 제시
 - 자치구의 변화된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 ※ 강남구 주민참여조례안 제안 측정항목·단위 등 조정교부금 합리적 산정방식 검토
 - 균형발전수요액 산정지표 개선 및 산정 방식 재검토
 - 기타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및 시·구 재정정책 상 연구가 필요한 사항

출처 : 행정국 자치행정과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주민 청구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자치구 재정 확보와 주민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 자치구의 부족분보다 큰 재원이 편성할 경우, 시(市) 재정의 비효율성 및 긴급한 예산의 집행 불가 등이 이어질 수 있어, 안정성 및 광역 투자 이행 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바, 법령의 목적(“부족한 세입 보전, ‘최소한’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을 보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본 개정안으로 인해 자치구의 과도한 여유 자원 형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결론적으로, 주민발안 취지를 존중하되, 조례의 효력 범위, 본 개정안에 대한 자치구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객관성·타당성·형평성 및 행·재정적 영향 등(행정국의 연구용역 결과 포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부결(재석 6명, 찬성 2명, 반대 4명).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20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8월 26일

발 의 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4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2025.7.28.)한 주민조례청구(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를 발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4조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의 22.6%에서 27%로 변경
- 제8조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측정단위(별표 1) 및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별표 2) 추가 및 변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0분의 22.6”을 “100분의 27”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② 일반관리비의 측정단위란 중 “인구수”를 “인구수 또는 생활인구수 중 큰수”로 한다.

별표 1 제4호 ⑤ 문화체육비의 측정단위란 중 “인구수”를 “인구수 또는 생활인구수 중 큰수”로 하고, “문화지수”를 신설한다.

별표 1 제7호 ⑬ 보건위생비의 측정단위란 중 “인구수”를 “인구수 또는 생활인구수 중 큰수”로 한다.

별표 1 제11호 ⑱ 인건비의 측정단위란 중 “자치구산하기관근로자수”를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의 측정단위란 중 “인구수”를 “인구수 또는 생활인구수 중 큰 수”로 하고, 같은 호 수치산정기준란 중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자치구의 인구수 및 외국인 등록수”를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자치구의 인구수 및 외국인 등록수 또는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일일 평균 생활인구수 중 큰수”로 한다.

별표 2 제5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 및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문화지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도서관수, 국가유산수, 3년 이상 개최된 지역축제수	개
23.자치구산하기관근로자수	자치구 산하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소속 근로자수	명

별표 2 제22호의 수치산정기준란 중 “자치구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수”를 “자치구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수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u></p> <p>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u>100분의 22.6</u>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p> <p>③ (생략)</p>	<p><u>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u></p> <p>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100</u> <u>분의 27</u>----- -----.</p> <p>③ (현행과 같음)</p>

[별표 1] <개정안>

측정항목·측정단위 분류표(제8조제2항)

분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1. 일반공공행정	① 지방의회비	지방의원수	
	② 일반관리비	인구수(변경) ⇒ 인구수 또는 생활 인구수 중 큰수 행정구역면적	
2. 공공질서및안전	③ 안전관리비	사업체종사자수 세대수	
3. 교육	④ 교육지원비	학생수	
4. 문화및관광	⑤ 문화체육비	인구수(변경) ⇒ 인구수 또는 생활 인구수 중 큰수 <신설> 문화지수	
		사업체종사자수 하수도연장	
5. 환경보호	⑥ 환경보호비	사업체종사자수 하수도연장	
		세대수	
6. 사회복지	⑦ 일반복지비	저소득취약계층	
	⑧ 기초생활비	영유아수 공공보육시설정원	
	⑨ 보육사업비	노인수	
	⑩ 노인복지비	아동청소년수	
	⑪ 아동복지비	등록장애인수	
	⑫ 장애인복지비	인구수(변경) ⇒ 인구수 또는 생활 인구수 중 큰수	
7. 보건	⑬ 보건위생비	인구수(변경) ⇒ 인구수 또는 생활 인구수 중 큰수	
8.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⑭ 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	
9. 수송 및 교통	⑮ 도로관리비	도로시설물연장 도로면적 미개설도로면적	
		⑯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
10. 국토및지역개발	⑰ 지역개발비	도시계획면적 녹지대면적 하천연장	
		⑱ 인건비	공무원수(확대) <신설> 자차구산하기관근로자수
11. 기타			

[별표 2] <개정안>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측정단위	수치산정기준	단위
1.지방의원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명
2.인구수(변경) ⇒ 2.인구수 또는 생활인구수 중 큰수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자치구의 인구수 및 외국인 등록수(변경) ⇒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자치구의 인구수 및 외국인 등록수 또는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일일 평균 생활인구수 중 큰수	명
3.행정구역면적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 관할구역 면적	km ²
4.학생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수	명
<신설> 5.문화지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도서관수, 국가유산수, 3년 이상 개최된 지역축제수	개
6.사업체종사자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사업체종사자수	명
7.하수도연장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관거, 암거, 개거, U형 측구의 연장	m
8.세대수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자치구의 세대수	세대
9.저소득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명
10.영유아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0세-5세 인구수	명
11.공공보육시설정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는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명
12.노인수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자치구의 65세 이상 인구수	명
13.아동청소년수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6세-24세 인구수	명
14.등록장애인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수	명
15.도로시설물연장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시설물로서 교량, 고가차도, 보도육교, 지하보차도, 일반터널의 연장	m
16.도로면적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면적	m ²
17.미개설도로면적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시설로서, 자치구청장이 공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미포장도로 및 미개설도로의 면적	m ²
18.자동차대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치구에 등록된 자동차대수	대
19.도시계획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립 면적	km ²
20.녹지대면적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일반녹지, 분리대, 수벽, 수림대 등 녹지대 면적	m ²
21.하천연장	「하천법」에 의한 당해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의 길이	m
22.공무원수(확대)	자치구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수(확대) ⇒ 자치구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수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수	명
<신설> 23.자치구신하기관근로자수	자치구 산하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소속 근로자수	명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제2항	○	재원 비율변경(100분의 22.6→27)에 의한 추가재정소요 발생 ⇒ 총 4,151,876,960천원 소요(연평균 830,375,392천원)

※ 별표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분류표(자치구별 배분산정)는 총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추계대상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조정교부금 추가 지급비용(안 제4조제2항)

나. 전제

- (교 부 금) 2025년 보통세 기준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제(매년 동일 전제¹⁾)
⇒ 2025년 기준 추가 발생(재정기준선 외 추가소요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 추계
- (발생기간) 2026년부터 비용 발생, 매년 소요, 추계기간(2026~2030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전제
- (미 고 려)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라. 방법

- (논의추계) 서울시 행정국 문의 및 2025년 서울시 예산서·사업설명서 등을 토대로 자체추계

1) [산정 구조적 특성 고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를 기준으로 재원을 산정하므로 매년 보통세 징수액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가져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징수액을 추정하기 어려움(이에 해당 추계액은 대략적 규모 파악용임)

⇒ 참고로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활용하여 산출하려 하였으나 최근들어 급변하는 세입여건(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간 무역분쟁 등)에 따라 징수규모가 매년 크게 달라지는 등 정합성 오류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계 객관성 측면에 이를 토대로 추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활용하지 않음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예산 기준 조정교부금 현황>

구분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시 <조정교부금>		3,812,308,120	4,167,858,240	4,171,745,184

(단위 :천원)

주 : 최근 3년간 조정교부금 본예산 기준 추이를 살펴보면, 총액은 증가세를 보이나 증가율은 일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어 매년 보통세 징수액에 따라 달라짐을 파악할 수 있음

자료 : 해당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사업설명서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4,151,876,960천원(연평균 830,375,392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조정교부금 추가재정소요액 (안 제4조제2항)	830,375,392	830,375,392	830,375,392	830,375,392	830,375,392	4,151,876,960
	소계(a)	830,375,392	830,375,392	830,375,392	830,375,392	830,375,392	4,151,876,96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830,375,392	830,375,392	830,375,392	830,375,392	830,375,392	4,151,876,960

주 : 2025년도 서울시 행정국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등을 토대로 추계

4. 덧붙이는 의견

-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변동가능성] 조정교부금 산정구조 특성상 2차년도 이후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당해 징수되는 서울시 보통세의 징수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보통세 수입의 주된 세목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대외적 경제여건과 부동산 정책변화 등에 의한 불확실성이 커진 현 상황에서 매년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임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조정교부금 추가 지급비용(안 제4조제2항)

2. 세부 추계내역

가. 총비용 = 4,151,876,960천원(연평균 830,375,392천원)

- 산출방식 = $\sum_{i=1}^5$ (조정교부금 연평균 추가 재정소요액)_i
i = 비용추계 연차(2026년~2030년)

2) [서울시 주요세목] 취득세는 서울시 지방세 수입(2025년 예산액 기준) 중 지방소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주요세목으로 연간 5~6조 규모임

나. 연평균 비용 = 830,375,39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현행(22.6%)	개정안(27%)	증가액
보통세	당해연도분 ³⁾	4,229,570,338	5,053,026,510	823,456,172
	지난년도분 ⁴⁾	35,539,630	42,458,850	6,919,220
소 계(A)		4,265,109,968	5,095,485,360	830,375,392
레저세분 ⁵⁾ (B)		19,959,662	19,959,662	-
지역자원시설세분 ⁶⁾ (C)		3,054,120	3,054,120	-
합 계(A+B+C)		4,288,123,750	5,118,499,142	830,375,392

주 : 해당 규정의 재원비율 변경은 보통세(A)를 기준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에만 영향을 미침

※ 합계(A+B+C)는 총체적 규모 파악용임

자료 : 2025년 본예산 기준

- 3) [산출방식] 2025년도 서울시 보통세 당해연도 예상액 18,714,913,000천원 × 교부율(현행 및 개정안)
 ⇒ 서울시 지방세 세목(10개) 중 목적세(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레저세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세목(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의 예상액
- 4) [산출방식] 2025년도 서울시 보통세 지난년도 예상액 157,255,000천원 × 교부율(현행 및 개정안)
 ⇒ 참고로 지난년도 수입은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한(12월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수납되었을 때에 그 납부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예산과목 100지방세수입-110지방세-113지난년도 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111-02 등록면허세
			111-03 주민세
			111-04 재산세
			111-05 자동차세
			111-06 레저세
			111-07 담배소비세
			111-08 지방소비세
			111-09 지방소득세
		112	목적세
			112-01 지역자원시설세
			112-02 지방교육세
		113	지난년도 수입
			113-01 지난년도 수입

자료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 5) [산출방식] 2025년도 서울시 레저세 예상액 99,798,310천원 × 20%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④ 시·도지사는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하 “승자투표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6) [산출방식] 2025년도 서울시 지역자원시설세 예상액 4,926,000천원 × 62%

⇒ '24. 4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징수교부금 제외 시 62%) 교부 신설